

보도	2023.7.19.(수) 조건	배포	2023.7.18.(화)
담당부서	민생금융국 민생금융총괄팀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 신동호 (02-3145-8266) 팀 장 이진아 (02-3145-8129)
		담당자	선 임 최준희 (02-3145-8261) 조사역 이상선 (02-3145-8121)

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
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

주요 내용

-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
- 금감원은 ‘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’(대부업체 이용 10계명)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

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

- ❶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.(서민금융진흥원 ☎1397)
- ❷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.
- ❸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‘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 **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**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.
- ❹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 SNS 등에는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.
- ❺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.
- ❻ 연 20%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**민·형사상 불법**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- ❼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·보관하세요.
- ❽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.
- ❹ 「채무자대리인 제도」 및 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→3)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.
- ❿ 「채무조정제도」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I. 배경 및 피해사례

-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·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
 - ‘신용소득·직업과 상관없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’하다는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
 - 폭행·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해 연 20%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취당하는 불법 사채피해가 지속 발생*

*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·신고 건수 :

[22.상반기] 461건 → [23.상반기] 902건 (약 1.96배 증가)

⇒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(10개)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

피해 사례 <붙임1 참고>

- ◆ (불필요한 대부업 이용) A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(신용등급, 연소득 등)을 충족됨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500만원(이자 연20%)을 빌림. 정책금융상품보다 연5%p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
- ◆ (정책금융상품 불법수수료 요구) B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‘00은행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비용이 발생한다’고 안내받음. 1,400만원 대출을 받고 그 업체로 150만원을 이체
- ◆ (불법업체 연결) C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(600만원)을 알아보던 중 신원 불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옴. 신용상태상 대출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내역의 80~100% 정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. 불법사금융신고센터(1332) 상담을 통해 피해를 모면
- ◆ (휴대폰 소액결제 피해)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D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.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보낸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. 약 1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%에 해당하는 수준

II.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

1 대출을 알아볼 때(계약체결 전)

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.

-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'최저신용자 특례보증', '소액생계비대출'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
- '어차피 안되겠지'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,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*하여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

*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(☎1397)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전국 약 50개)
(<붙임 2> 정책서민금융상품 개요 및 문의처 참고)

- 한편, 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·표현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여 불법 사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

-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됨

※ '23.6.19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「정부지원, '서민금융'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」 참고

②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.

-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·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니, 반드시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

-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'파인' 홈페이지(fine.fss.or.kr) → '금융회사 정보' → 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

-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, 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,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

③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'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'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.

- 등록 대부업체임을 확인한 후 대출을 문의하였는데, 그 대부업체(전화번호)가 아닌 다른 업체(전화번호)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음
- 등록 대부(중개)업체가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있으니

- 다른 업체(전화번호)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·감독하는 기관*에 해당 사실을 제보

*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→ 금감원(1332-3번),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→ 해당 지자체('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' → '담당자 연락처')

※ '23.5.23일자 금감원 등 합동 보도자료 「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,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,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」 참고

④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 SNS 등에는 이력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.

-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(보이스피싱) 피해로 이어지거나, 소개료,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편취 등 피해 발생 가능

⑤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*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.

* '파일공유 앱'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'연락처', '사진' 등 정보 일체를 수집

-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·친구·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음

※ '23.3.20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「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!」 참고

2 대출을 받을 때(계약 체결시)

6 **연 20%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·형사상 불법**이고, **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**입니다.

- 사례금, 할인금, 수수료, 공제금,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*

* (예외) 담보권 설정비용,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비용

- 연 20%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**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→3번,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)**에 신고

- 법정 최고금리(연 20%, '21.7.7. 시행)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**형사처벌**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이며,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 가능

7 **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하세요.**

-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, 대부금액, 대출이자율, 연체이자율, 상환방법,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

- 위반시 제재(영업 일부정지,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를 받게 됨

- 따라서, **당당하게**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,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, 연체이자율, 상환방법,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**꼼꼼하게** 확인하고,

- 기재내용이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

8 **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.**

-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, 대포 통장, 대포폰 등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여 **사회적 피해**가 확대될 수 있으며, 본인도 **형사처벌 대상**이 될 수 있음

3 대출받고 나서(계약체결 이후)

9 **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「채무자대리인 제도」를 적극 활용**하고, **경찰·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**하세요.

-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**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**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**법률서비스**를 지원

* 금감원 홈페이지,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을 통해 신청

- 폭행·협박 등 **불법추심 피해**가 발생하는 경우 **녹취, SNS 등 증빙자료**를 확보하여 **경찰*(☎112)·금감원(☎1332→3번)**에 신고(붙임3)

*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·지구대·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

10 **「채무조정제도」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**

-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**채무 조정, 개인회생·파산** 등 제도를 **문의*·활용**

* (채무조정) 국민행복기금(한국자산관리공사) (☎1588-3570, www.happyfund.or.kr)

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, www.cyber.ccrs.or.kr)

(개인회생·파산) 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, www.klac.or.kr)

III.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

-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·단속 및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

- 금융소비자께서도 「10가지 유의사항」을 유념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 1 불법업체가 대부업체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는 실제 사례

[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불법 인터넷사이트]

신용조회 또는 한도조회를 핑계로 이름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

아래 신청장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. 무분별한 과다조회를 방지하여 개인 신용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, 기록이 남지 않는다. 단, 현재 연체중이거나 무직자는 접수 불가하다. 한도 확인 후 개인정보는 전부 삭제된다.

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가능여부 안내

연체·무직·회생·파산·군미납 불가
자금 소진시 예고없이 종료됩니다.

이름:

연락처: 010-

신청대상 (선택해주세요)

신규 추가 대환·통합 담보소유자

4대보험 가입[무대] 미가입

신용카드 사용[무대] 미사용

개인정보수집동의서 이용동의

무료한도조회

[SNS에서 지인 연락처 또는 사진을 요구당한 실제 사례]

차용증에 비상연락망 제공 및 지인 채권추심 동의를 요구	연체시 신분증/ 본인사진, 지인연락처 등을 SNS등에 무차별 유포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차용증 ※

채무자 [] 은 채권자 [] 으로부터 2023년 2월 26일 330,000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.

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3년 3월 5일 오후 6시 까지 차용금액을 변제한다.

금전차용을위해 채무자 본인 [] 은 채권자 [] 에게 비상연락망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진다.

연락두절 등 채무상황에 문제가 생길 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추심하는 것에 동의한다.

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신용정보조회등에 동의한다.

이장님 (직장 동료)
010- []
부장님 (직장 동료)
010- []
책임님 (직장 동료)
010- [] (지인)
010- []
010- []
010- []
직장 동료 지인 번호팔아서 돈 빌리고 반제안할 경성동 []
연간소액기
전화번호밖에해서 유해주소 []
(연, 타, 패, 스, 록, 더, 드, 망카패 연상사진 올립니다)

붙임 2 정책서민금융상품 및 문의처 (출처 : 서민금융진흥원 홍보 브로슈어)

<p>자금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</p> <p>저소득·저신용자를 위한 창업·사업운영·생계자금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</p> <hr/> <p>소득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소득 생계자금을 위한 직접대출 상품 · 대출한도 : 최초 50만원 + 추가 50만원, 최대 100만원 · 금리 : 연 15.9%, 최저 연 9.4% (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3%p씩 인하, 금융교육 이수 시 0.5%p 추가 인하)</p> <hr/> <p>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을 지원 · 한도 : 창업자금 7,000만원 이내 / 운영자금 2,000만원 이내 · 금리 : 연 4.5%</p> <hr/> <p>전통시장 소득대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 전통시장 상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 · 한도 : 점포당(1인당) 1,000만원 이내(무점포의 경우 500만원 이내) · 금리 : 연 4.5% 이내</p> <hr/> <p>민간사업수행기관 사업 민간사업수행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, 수행기관의 저소득층 및 사회적기업 대상 대출사업 운영을 지원</p> <hr/> <p>미소드림저금 미소금융·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적극 이자 지원 · 납입금액 : 월 최대 20만원 · 이자를 최대 연 10% 상당</p> <hr/> <p>한부모가족의료보험 (저소득층이용보험2)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전액 지원</p> <hr/> <p>서민차입지원보험 재기지원자금, 취약계층차입자금 이용자 및 신용회복 신규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전액 지원</p> <hr/> <p>청년도약계좌 생활·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(만19세~34세)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 · 적금방식 : 자유적립식 (월 최대 70만원 이하, 5년 만기) · 지원내용 : 정부기여금 + 취급기관 이자 + 이자 비과세 혜택 ※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</p>	<p>대출 보증 지원</p> <p>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.</p> <p>※ 상품별 세부 신청자격은 각각 다르니, 정확한 상담은 서민금융센터 국번없이 1397을 이용해주시 바랍니다.</p> <hr/> <p>햇살론유스 만 34세 이하 대학생·청년의 학업·주거, 생계자금을 위한 신용 보증부 대출 상품 · 대출한도 : 최대 1,200만원 · 금리 : 연 3.5% (보증료를 연 0.1~1% 별도)</p> <hr/> <p>근로자햇살론 저소득·저신용 근로자의 생계자금을 위한 신용 보증부 대출 상품 · 대출한도 : 최대 1,500만원 (23.12.31.까지 최대 2,000만원 한시적 증액) · 금리 : 연 11.5% 이하 (취급기관별·이용자별 차등, 보증료를 0.9~2% 별도)</p> <hr/> <p>햇살론15 대부업·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·저신용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 · 한도 : 최대 2,000만원 · 금리 : 연 15.9% (성실상환 시 최종 연 9.9%, 보증료를 포함)</p> <hr/> <p>햇살론뱅크 신용도와 무채상태가 개선된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위한 은행권 신용 보증부 대출 상품 · 대출한도 : 최대 2,000만원 (23.12.31.까지 최대 2,500만원 한시적 증액) · 금리 : 취급기관별·이용자별 차등 (보증료를 0.9~2% 별도)</p> <hr/> <p>햇살론카드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·저소득자의 카드발급을 지원하는 신용 보증부 신용카드 상품 · 이용한도 : 최대 180만원</p> <hr/> <p>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(햇살론15)을 지원 받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신용 보증부 대출 상품 · 대출한도 : 최대 1,000만원 · 금리 : 연 15.9% (성실상환 시 최종 연 9.9%, 보증료를 포함)</p>
--	--

붙임 3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·신고 방법

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 또는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

[불법광고 등 게시물 제보]

- 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·신고

[불법대부업자에 의한 피해신고]

-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고금리 수취, 불법채권 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 - 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-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신청 화면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

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[불법광고제보]	[불법대부업자에 의한 피해신고]
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민원·신고	①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민원·신고
민원·신고 +	민원·신고 +
e-금융민원센터 ☞ +	e-금융민원센터 ☞ +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	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
불법금융신고센터	불법금융신고센터
-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	-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
· 이통안내	· 제보 상담하기
· 제보하기	· 제보 상담내용 조회
· 제보내역조회	
	②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민원·신고
	민원·신고 +
	e-금융민원센터 ☞ +
	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
	불법금융신고센터
	-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
	· 이통안내
	· 피해신고
	· 신고내역조회

붙임 4 채무조정제도 및 문의처

□ 채무조정제도 개념

-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 (연체이자 감면, 원금 일부 감면, 상환기간 연장 등)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

[참고] 채무조정제도 체계



□ 제도 이용 문의처

- (채무조정) 국민행복기금(한국자산관리공사) (☎1588-3570, www.happyfund.or.kr)
- (워크아웃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, www.ccrs.or.kr)
- (개인회생·파산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, www.klac.or.kr)